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78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김주영 · 이학영 · 박 정
이수진 · 임호선 · 김태선
박균택 · 안호영 · 주호영
황 희 · 민홍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무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급 기능인력의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종합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격(안 제3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법인으로 함.

나. 이사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 및 제14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다.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설치(안 제19조 및 제20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의원회,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사위원회를 둠.

라.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안 제24조)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31조)

국가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 대학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국가의 지원(안 제34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성과목

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학운영계획의 성과를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

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지위의 승계(안 부칙 제2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포괄적으로 승계함.

아. 학장 및 교직원 등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6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 당시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각 대학의 학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대학의 부총장으로, 각 지역 캠퍼스의 학장은 그 캠퍼스의 학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하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교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임용된 것으로 함.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인력개발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에 관한 사회적 책무 이행의 역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등교육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기능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의 “학장”은 “총장”으로 본다.

③ 제35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부설하는 중등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중

「등교육법」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설치학교)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학을 설치하고, 대학 별로 필요한 지역에 캠퍼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각 대학과 지역캠퍼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각 지역의 대학과 대학 소속 캠퍼스의 명칭과 위치
5.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11. 학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와 관련 법인, 조합 및 기관 등과의 관계
13. 학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6.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7.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학칙)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대학 및 지역캠퍼스에 설치되는 과정과 학과
2. 학년도와 학기, 수업일수
3. 수업연한
4. 원격수업 등 수업방식
5. 각 과정 및 학과별 학생정원
6. 입학자격

7. 신입생 선발방법
8. 졸업 요건
9. 학생에 대한 포상과 징계
10. 기타 학사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

제2장 조직

제7조(임원)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
2. 감사 2명

②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률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8조(총장)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교육과 연구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총장의 선임) ① 총장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제도와 행정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총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부총장, 학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각 대학에 1명의 부총장을 둔다.

② 각 대학에 소속하는 지역캠퍼스에 학장을 둔다.

③ 부총장과 학장은 정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총장이 선임한다.

④ 부총장과 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총장과 학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총장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총장

2. 부총장 3명

3. 제1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1명

4. 재정경제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인사 각 1명

5. 기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교외 인사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선임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제14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장이 궐위(闕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이사장과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⑧ 제7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감사) ①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대학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업무와 운영의 적법성을 감사하는 일

3. 이사회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4.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한 일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17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다.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학사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1. 제34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과 관련된 사항
2.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3.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4. 교수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9.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11. 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2.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3.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학사위원회는 총장과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직원 중 부총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학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 ④ 학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총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재무회계

제21조(법인회계 등)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회계연도는 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자본금 등)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자본금은 이 법 시행 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소유자산의 평가액과 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자산의 평가액 및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기채(起債) 또는 장기차입으로 발생하는 부채평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자본금의 산정방식, 재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자본금의 증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재산은 교육과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과 그 외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이나 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면적·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이나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예금채권과 교육이나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24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대부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대

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6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의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정에 따른다.

제27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에 의결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 결과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 지원 및 육성 등

제3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중·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의 발전 및 실습을 위한 지

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없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4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평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부설학교

제35조(부설학교 등)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 이전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설치·경영하던 중등학교는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로 본다.

제36조(교직원 임면) ① 부설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제37조(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21조

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부설학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금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부설학교”로 본다.

제6장 보칙

제3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명칭과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42조(과태료) ① 제3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지위의 승계) 이 법 시행 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3조(총장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이사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총장을 겸임한다.

제4조(연금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 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교직원은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법인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임원은 그 잔여 임기 동안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6조(학장 및 교직원 등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각 대학의 학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대학의 부총장으로, 각 지역 캠퍼스의 학장은 그 캠퍼스의 학장으로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교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회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법인회계는 종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회계를 승계한다.

제8조(종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각 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각 대학의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재적생, 졸업생 및 제적·제명된 사람으로 본다.